

■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[별표 3] <신설 2020. 1. 7.>

살수거리별 수압기준(제13조의2제2항 전단 관련)

살수거리	수압기준
10미터 이하	3바(bar) 이하
10미터 초과 20미터 이하	5바(bar) 이하
20미터 초과 25미터 이하	7바(bar) 이하
25미터 초과	13바(bar) 이하